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11. 21.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60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교육·문화·예술·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우리구에서 설립·운영 중인 공공시설의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셔틀버스 운영, 이용대상, 이용료(안 제3조~제5조)
- 다. 셔틀버스 운행범위, 운행일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라. 영등포구 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영등포구 노선조정위원회 회의 및 수당(안 제9조~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인권영향평가: 별도 의견 없음

3) 행정규제심사: 신설 · 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

5) 위원회 운영사항 검토 결과: 별도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5.10.2.~10.22./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제정 배경 및 취지

○ 영등포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교육·문화·예술·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의 접근성이 낮아 교통약자 및 고령층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서 설립·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임.

○ 한편,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반영한 사항임.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p>(교통약자의 복지시설 접근성 제고 위한 노력 필요)</p> <p>○ 체육센터, 평생학습관,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시설 인근까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은 곳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이 제기됨.</p>	<p>○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버스 노선 검토 및 교통약자 중심 셔틀 버스 운행도 검토해주길 바람.</p> <p>○ 아울러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로 향하는 버스 노선도에 대한 홍보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람.</p>

- 또한, 서울시 내 6개의 자치구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음.

연번	구분	자치구	조례제정	운행개시
1	셔틀버스 운행 중	용산구	'11. 7.	'11. 7.
2		성동구	'24. 7.	'25. 1.
3		노원구	'24. 12.	'25. 7.
4		중구	'25. 7.	'25. 9.
5	조례 제정 완료	관악구	'25. 4.	미정
6		금천구	'24.10.	미정
7	조례제정 중	서대문구	본회의 미상정 (보류)	미정

□ 주요 내용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인 “공공시설”과 “셔틀 버스”에 대해 규정함.
- 다만, 조례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정의 표현에서 “등”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나, “영등포구에서 설립·운영”하는 시설에 한함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기재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운영)는 구청장이 직접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필요시 민간 또는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셔틀버스 운행 중단 시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규정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안 제4조(이용대상)는 구 보건소 이용자,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구립 시설 이용자 및 교통약자로서, 본 조례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규정함.
- 안 제5조(이용료)는 셔틀버스 이용료를 무료로 하도록 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 안 제6조(운행범위)는 셔틀버스의 노선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노선 조정 시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노선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안 제7조(운행일자)는 평일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운행일자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안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변경·폐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노선 결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 위원으로 실질적인 셔틀버스 이용자인 주민의 대표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노선 운영의 실효성과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규정으로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안 제8조제5항은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상위법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은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위원회 구성 시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절차, 간사 지정,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수당)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교육·문화·예술·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셔틀버스는 2026년 7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도 6개월 운영분의 해당하는 5억 1,48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됨.
 - 아울러 2027년 이후에는 연간 8억 8,400만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셔틀버스가 무료로 운행됨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1)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2)제4조제1항에도 3)저촉되지 아니함.
 - 아울러, 「공직선거법」 4)제112조제2항제4호제나목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근거한 무료 셔틀버스 운행은 5)「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법제처 의견제시 안건번호 의견18-0259

4)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면/인터넷 질의답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향후 시행에 있어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 구간을 최소화하여 운수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집행부서는 지난 10월 27일 마을버스 운수업체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음.

영등포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노선 계획(안)

구 분	주요 노선경로	운행거리	운행시간	운행대수	배차간격
순방향	보건소→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영등포배드민턴장→YDP미래평생학습관→제1스포츠센터→신길책마루문화센터→영등포문화원→제2스포츠센터→보건소	13.5km	75분	3대	약 25분
역방향	보건소→아트홀→영등포문화원→신길책마루문화센터→제1스포츠센터→YDP미래평생학습관→영등포배드민턴장→구립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보건소	11km	60분	3대	약 20분

- 또한, 본 사업의 목적이 교통약자 및 건강·교육·문화 등 증진에 있는 만큼, 교통약자와 공공시설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시 이용대상 확인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와 교통복지 향상이라는 지역사회 공익에 부합하며, 향후 구민 이동편의 증진과 구민의 건강과 교육·문화·예술·체육활동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법령(중앙행정기관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